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4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영배 · 김종민 · 복기왕
정준호 · 조정식 · 민병덕
한병도 · 박수현 · 조승래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의 소재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u>	<u>제12조(소재지) 대법원의 소재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한다.</u>